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4.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2004.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1964.12.31. 이전 2004.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위탁아동		○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4.12.31.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8세이상)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 포함)	2016.12.31. 이전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의료비	×	×	○	
	교육비	×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	○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항목	과다공제 사례
1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i>*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i>
2 부양가족 중복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6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7 주택자금 과다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i>*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i>
8 교육비 과다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새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9 의료비 과다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 <i>* 제외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i>

* **1** ~ **5**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